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831

발의연월일: 2021. 4. 30.

발 의 자:이상헌・김정호・홍정민

신정훈 • 윤관석 • 유동수

이용호 · 신동근 · 정춘숙

유정주 · 임오경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,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동물실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.

또한 현행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하고 있으나,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동물실험계획서를 심의·승인함에 있어 미승인 건이 0.6%에 불과하여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와 윤리적인취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비판이 있음.

이에 동물실험의 원칙에 동물실험을 하려는 자는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정한 보호공간 마련, 적합한 음식이나 물의 제공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,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실험시행기 관의 장은 실험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제4항 및 제28조의2 신설).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"제6항까지에서"를 "제7항까지에서"로 한다.

④ 동물실험을 하려는 자는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정한 보호공간 마련, 적합한 음식과 물의 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3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8조의2(전임수의사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험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를 전담하는 수의사(이하 "전임수의사"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전임수의사를 두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.
 - ③ 전임수의사의 자격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전임수의사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임수의사를

두어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동물실험의 원칙) ① ~	제23조(동물실험의 원칙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동물실험을 하려는 자는 실
	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
	위하여 적정한 보호공간 마련,
	적합한 음식과 물의 제공 등의
	조치를 하여야 한다.
<u>④</u> ~ <u>⑥</u> (생 략)	<u>⑤</u> ~ <u>⑦</u> (현행 제4항부터 제6
	항까지와 같음)
<u>⑦</u> 제1항부터 <u>제6항까지에서</u>	<u>⑧</u> <u>제7항까지에서</u>
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실험의	
원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	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	
고시한다.	
<u> <신 설></u>	제28조의2(전임수의사) ①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실
	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
	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건강
	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험동
	물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를 전
	담하는 수의사(이하 "전임수의
	사"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
	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

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전임수의사를 두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.

③ 전임수의사의 자격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